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서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03. 8. 28.

나. 제출자 : 안익순 의원 등 20인

다. 회부일자 : 2003. 8. 28.

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일시 : 2003. 8. 28(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구성인원 : 12명

○ 위원장·간사선임

– 선임일시 : 2003. 8. 29(제106회 임시회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선임내역 : 위원장(김덕균 의원), 간사(박병화 의원)

마. 상정 및 의결일시

○ 상정 : 2003. 9. 1(제106회 임시회 제2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의결 : 2003. 12. 12(제109회 정례회 제12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2. 징계요구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익순 의원

나. 징계요구 사유

○ 류재구 의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의장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준비서면에서 부천시의회와 의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음.

○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원의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기에 징계를 요구함.

3. 주요토론 및 심사요지

가. 징계요구 이유서에서 제기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의장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자료제출 등 11차에 걸친 사실조사과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 본 특위의 심사의견을 요약하면 준비서면 내용 중에서

- 우리 의회가 시장출마 후보의 경쟁자인 자신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등 악의적인 정치적 모함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 점,
-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명의 시의원들이 시장출마를 위한 물밑 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고, 각 후보자들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의원 본연의 의무인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팽개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점,
- 시장출마를 내심 노리는 자당 의원들마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그 간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팽겨치고 이에 찬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 그리고 불신임의 사유가 위법이며 불신임 목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한 점 등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토론과 관계자의 증인 출석·답변, 그리고 징계대상자인 류재구 의원의 소명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징계특위 위원 각자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음.

- 그 결과,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입증 없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부천시 의회의 위상과 시민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땀흘려 일해오고 있는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점이 인정되며,
- 비록, 법원을 상대로 한 서면 내용일지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다분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의회와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른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론 임.
- 또한 준비서면에서 “의회사무국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원만한 업무진행을 이끌어 왔고, 이러한 까닭에 직원들이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 높이 평가하고 의원활동 보좌와 의회업무를 자신의 일과 같이 생각하며 열심히 뛰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사실 확인한 바, 많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 특히, 직제규칙에도 없는 내부 직제를 만들어 시행한 결과 사무국 직원들간의 위화감과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 업무 보좌 기능 강화 보다는 의장 개인의 보좌기능 강화만을 만들었다는 다수 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사무국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중론이었음.
- 결론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거론된 사항이 동료의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 징계요구된 류재구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4조(지방의원의 의무)에서 규정한 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함.

4. 심사결과

- 출석정지 30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